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53
----------	-------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자 : 최수진 · 안철수 · 김 건
박충권 · 신성범 · 김선교
이인선 · 강선영 · 김민전
박준태 · 곽규택 · 이상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보상과 평가 체계는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불안정한 인건비 구조와 단기 과제 위주의 환경은 우수 인력의 해외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박사학위 취득 후의 신진연구자를 포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개념을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확대 · 개편하고,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되는 연구장려금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신진연구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

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의3, 제9조의4 및 제20조제1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3 중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를 “신진연구자 및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의”로 한다.

제9조의4의 제목 중 “박사후연구원”을 “신진연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을 “신진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으로, 박사후연구원(박사학위 취득 후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박사후연구원”을 “신진연구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있는 사람”을 “있는 사람 또는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의2. (생략) 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u>박사후연구원</u> , 제9조의6 제1항에 따른 <u>학생연구자</u> , <u>신진연구자의</u>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2. ~ 7. (생략) ④ (생략) 제9조의4(이공계 <u>박사후연구원</u>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u>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u> 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 ----- <u>신진연구자</u> 및 제9조의6 제1항에 따른 <u>학생연구자의</u> ----- ----- 2.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4(이공계 <u>신진연구자</u> 지원) ① ----- <u>신진연구자</u> [<u>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으로, 박사후연구원(박사학위 취득 후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u>]을 포함

	<u>한다. 이하 같다]</u> ----- ----- ----- -----.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u>박사후연구원</u>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② ----- ----- <u>신진연구자</u>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u>있는 사람</u> (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 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① --- ----- ----- ----- <u>있는 사람</u> <u>또는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이공계 신진연구자</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